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

2018. 12.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

1. 검토배경	1
2.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2
2-1. 기본방향	2
2-2. 안정성(安定性) 및 공공성(公共性) 확보	3
2-2-1. 자회사 설립·위탁의 근거 마련	3
2-2-2.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3
2-2-3. 모회사 100% 출자 원칙	3
2-2-4. 방만한 자회사 설립·운영 지양	3
2-3. 독립성(獨立性)과 책임성(責任性)의 조화	4
2-3-1. 자회사 경영에 대한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4
2-3-2.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4
2-3-3.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4
2-3-4.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4
2-4. 자회사 전문성(專門性) 강화	5
2-4-1.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5
2-4-2.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5
3. 자회사 설립 절차	6
3-1. 공기업·준정부기관	6
3-1-1. 사전협의	6
3-1-2.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의결	6
3-1-3. 설립 세부절차(상법상 주식회사)	7
3-2. 기타공공기관	8
3-3. 지방공기업	8
3-3-1. 관련 규정	8
3-3-2. 주요 절차	8
3-3-3. 설립 세부절차(상법상 주식회사)	9

1. 검토배경

-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간중심 경영혁신과 노동존중의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을 마련하여 추진 중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17.10)」 따라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20만여 명이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자회사,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자회사 방식을 택할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 * (전환방식)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등 전환방식 결정 (가이드라인 p.34)
- 현재 자회사 방식을 택한 기관은 37개소(‘18.10월말 기준)로, 개별기관의 사정·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된 기준 없이 자회사가 설립되다보니, 자회사로 인한 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 빈발
 - 이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2-1. 기본 방향

- ☐ 기존 용역방식의 경우 간접고용 형태로 인해 노동자의 처우 악화 및 사용자의 책임 회피 사례도 발생
 -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기업의 전문성 축적 저해,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 내재 등 문제점도 야기
- ☐ 신설되는 자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모회사와 경영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전문 서비스 조직」이어야 함
 - ①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 ②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 ③ (전문성 확보 지향)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를 갖춘 조직
- ☐ 각 기관은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i)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ii)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iii)전문성을 확보·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

2-2. 안정성(安定性) 및 공공성(公共性) 확보

2-2-1. 자회사 설립·위탁의 근거 마련

- 모회사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 또는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 및 구체적인 위탁사업내용 등 명기 검토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위탁 근거 마련,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추진 중

2-2-2.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 자회사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자회사 경영안정 및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달성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7조 등 개정(기획재정부, '18.7.5)

**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지방공사의 경우에만 수의 계약 가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 수의계약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동종·유사업종 대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계약

*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KT가 자회사인 한국 통신산업개발(주)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안

2-2-3. 모회사 100% 출자 원칙

- 자회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하여 설립 시 모회사의 100% 출자를 권고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모회사 100% 출자

- 구체적인 출자방식, 금액 비율 등은 법적 제한, 기관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고, 노·사·전문가협의기구 논의과정을 거쳐 정하되, 민간자본의 지분참여는 지양

2-2-4. 방만한 자회사 설립·운영 지양

- 자회사의 임원·관리직수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상의 전환계획인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 구성

* (예시) 모회사의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권역별·직종별 자회사 중복 설립은 지양

2-3. 독립성(獨立性)과 책임성(責任性)의 조화

2-3-1. 자회사 경영에 대한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 모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 경영 전 과정(전략→조직 및 예산→평가→개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 경영에 대한 직접 개입 대신 모·자회사 간 경영협약 등을 통해 자회사 운영 및 서비스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

2-3-2.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 투명성 확보

-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노사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도모
-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해 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보

*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경영참여방안 도입 검토

2-3-3.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 모·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공동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 조성 모색
-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과제에 대한 소통 및 협의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가칭)‘노사공동운영협의회’ 구성 합의(‘17.12월) - 공항발전과 전환자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운영 등 논의

2-3-4.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 기관 자율적으로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근로조건의 공동 개선을 위한 제도 모색

*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가능(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 자회사의 산업안전, 예산 등 모회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 필요

* 합리적 근거 없는 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지양

2-4. 자회사 전문성(專門性) 강화

2-4-1. 교육훈련 등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 ‘인재육성’ 관점에서 역량기반 근로자 교육체계* 수립,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및 조직몰입도 증진 노력

* (사례) (주)서울메트로환경은 직급별 교육 실시 ① 관리자: 리더십·고객만족 교육 등 ② 현장직원: 직무교육·서비스정신 등 상하반기 집체교육 ③ 현장 직원 지원자 대상 ‘청소·위생 아카데미’ 개설, 수료자 승진 시 우대

- 교육프로그램 구성 시 노동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승진 가점 부여, 교육수당 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참여 유인 마련

- 원가절감, 공정개선, 도구개발 등 지속적인 노하우 축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문성 향상 노력 지속

* (사례) (주)서울메트로환경은 청소업무 개선을 위해 모회사(당시 서울메트로)에 도구개발팀이 구성, 특허 공동출원

2-4-2.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설계

- 임금체계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를 반영하고, 근로자가 직무와 능력 등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축

*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 관련 안내(공공기관노사관계과-2037, '18.10.11)」 참조

- 숙련 형성 정도, 서비스 성과 등을 반영하여 상위 단계로 승급 또는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설계

- 임금수준은 전환 이전 임금수준, 모회사의 예산, 직무별 시장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

* 관리자 인건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자회사 전환자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

- 관리역량을 갖춘 근로자가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 (사례) (주)서울메트로환경은 여성 청소근로자 중 능력과 인격을 갖춘 근로자를 관리장으로 승진시킴으로서 평직원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한 CEO 선발 및 공정채용 절차에 따른 유능한 인력 선발 시스템 구축

3. 자회사 설립 절차

❖ 이하 내용은 자회사 설립의 주요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3-1. 공기업·준정부기관

3-1-1. 사전협의

-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등 사전협의 필요
- (필요서류)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

<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른 계획서 주요항목 >

- ①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 ②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 ③ 출연·출자의 금액 및 시기
- ④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 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 ⑥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절차) ①사전협의 요청(공공기관→주무기관의 장) ②검토 및 회신(주무기관의 장) ③사전협의 요청(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④검토 및 회신(기획재정부장관)

3-1-2.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의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지분 취득 시 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

3-1-3. 설립 세부절차(상법상 주식회사)

구 분	주요내용
자회사 기본계획 마련	• 필요시 기관 내 자회사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법인설립을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사전협의 진행 • 필요시 이사회 심의·의결
발기인 구성	• 출자의사가 있는 발기인 선발
자본금 규모 결정	• 최저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발기인 조합 계약	• 주식회사 설립계약서(발기인 상호간 계약) 작성
정관 작성	• 구성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증인의 인증(상법 제292조)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식인수 / 주금납입	• 각 발기인은 서면에 따라 주식 인수(상법 제293조) • 발기인은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납입하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서 발급(상법 제318조)
창립총회 / 이사 등 선임	• 주식의 인수, 납입 등 회사의 창립사항에 대한 보고 • 주금납입이 완료된 후 발기인은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상법 제296조)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상법 제298조)
설립등기	• 설립의 등기는 위 절차를 마친 후 2주 내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 • 등기로 주식회사는 최종적 설립되며, 법인격 취득
사업자 등록	• 설립등기를 마친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직원 채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채용
인허가 취득	• 필요 인허가사항 취득

※ 이 외에도 개별법률·정관·지침 등 기관별로 별도의 검토사항 및 필요절차가 존재할 수 있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비영리법인)은 사전협의 정관·등기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무관청 허가 등 별도 절차가 존재하므로 민법 등 참조

3-2.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전협의 등 진행

3-3. 지방공기업

3-3-1. 관련 규정

- (법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만 타법인 출자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 전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지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17.12)’에 따라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p.50)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 타법인 출자는 당해 지방공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외연확장 수단으로 자회사 신설 및 관련법인 출자 등은 불가
- 출자대상 사업의 적정성, 아웃소싱의 효과 등 출자타당성 검토 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 타법인 출자 이외의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 금지

3-3-2. 주요 절차

-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지방공사는 출자타당성 검토 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 후 자회사 설립
- 타당성 검토(용역) → 지방의회 의결 → 설립 세부절차 진행

3-3-3. 설립 세부절차(상법상 주식회사)

구 분	주요내용
설립방침 결정	• 필요시 기관 내 자회사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 내부 검토
설립 타당성 검토	•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 설립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제시 :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B/C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설립타당성 검토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실시 : 검토기관은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선정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확정
자본금 규모 결정	•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지방의회 의결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자회사 설립 결정
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	• 구성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공증인의 인증(상법 제292조)
발기인 조합 계약	• 주식회사 설립계약서(발기인 상호간 계약) 작성
주식인수 / 주금납입	• 각 발기인은 서면에 따라 주식 인수(상법 제293조) • 발기인은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납입하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서 발급(상법 제318조)
창립총회 / 이사 등 선임	• 주식의 인수, 납입 등 회사의 창립사항에 대한 보고 • 주금납입이 완료된 후 발기인은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상법 제296조) •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상법 제298조)
설립등기	• 설립의 등기는 위 절차를 마친 후 2주 내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 • 등기로 주식회사는 최종적 설립되며, 법인격 취득
사업자 등록	• 설립등기를 마친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직원 채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 및 신규 근로자 채용
인허가 취득	• 필요 인허가사항 취득

※ 이 외에도 개별법률·정관·지침 등 기관별로 별도의 검토사항 및 필요절차가 존재할 수 있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비영리법인)은 사전협의 정관·등기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무관청 허가 등 별도 절차가 존재하므로 민법 등 참조

1 공기업 · 준정부기관

○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시행령 제29조의2

제51조의2 (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를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출연·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
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의결

라.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마.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② 출연·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 제51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하는 출연·출자에 관한 약정을 맺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약정을 맺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수임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동 기관의 검토로 이사회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에 한하여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2. 다른 법인에 30억원 이상 출자하고자 할 경우
3. 출자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할 때 채무보증행위를 하려는 경우

○ (안내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연·출자 사전협의 업무절차 안내 (‘18.3,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 사전협의를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 주요 절차,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서 양식 예시 등

3 지방공기업

○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지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17.12)」 p.50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시 타당성 검토 실시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 타법인 출자는 당해 지방공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외연확장 수단으로 자회사 신설 및 관련법인 출자 등은 불가
- 출자대상 사업의 적정성, 아웃소싱의 효과 등 **출자타당성 검토 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 타법인 출자 이외의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 금지

- 자회사 설립 시 준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 방식 등 규정